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

제안서 작성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3
3. 과업내용	4
4. 과업의 일반원칙	11
5. 과업수행 방법	14
6. 과업성과품 제출	15
7. 보안대책	16
II. 예정공정표	18

I.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제안서작성 지원 용역

□ 과업목적

- 방글라데시 BSMSN 산업단지는 독립영웅(초대 대통령)이자 현총리의 부친인 ‘방가반두’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방글라데시 최대 단일 공단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중공업까지 관장하는 공단으로 개발 중
- BSMSN 산업단지의 용수수요량은 2040년 기준 최대 100만^m³/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주무관청인 BEZA는 약 55만^m³/일의 용수를 해수담수화 설비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과도한 운영비와 까다로운 운영관리로 지표수를 활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250MLD 용량의 메그나강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 중
- 본 과업은 기존 KIND 지원을 토대로 작성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결과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측 TA(Transaction Advisory, 선정 완료)의 타당성 검증 및 RFP 작성 관련, 해당 사업이 타당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도록 지원하며, 발부될 RFP에 따라 본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측과의 협상지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 경제내각위원회(CCEA) 최종 승인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발주처는 정부 측의 TA 타당성조사(Commercial Feasibility Study)를 곧 완료하고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023년 3/4분기에 제안요청서 발급을 목표로 진행 중임
-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제안서 작성 중 일부 과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PPP) 수주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제안 예정자 수행업무 및 최종낙찰자 과업내용 요약

- 사업 제안 예정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
 - 사회/환경 및 수요예측 분야 조사
 - EPC 및 O&M 금액 산출, 기술 분야 제안서 작성
 -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이하 “RFP”)에 부합하는 하나의 최종 성과물(이하 “사업 제안서”) 작성 총괄
 - 사업 제안서 제출 후 대 발주처 Clarification Meeting 총괄 및 기술분야 지원
- 본 과업수행자가 하는 용역
 - 입찰설계를 위한 지형/지반조사 및 그에 수반되는 측량
 - 입찰설계 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설계 성과품 작성
 - 기술, 재무, 법률 분야 제안서 작성
 - 사업제안 예정자의 투자심의자료 작성 지원
 - 사업자 수행 과업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 사업제안서 제출 후 대 발주처 Clarification Meeting 기술, 재무, 법률 분야 지원

※ 분야별 세부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 “3. 과업내용” 따름

□ 사업개요

- (사업명) BANGABANDHU SHEIKH MUJIB SHILPA NAGAR (BSMSN) WATER SUPPLY PPP-G2G PROJECT
- (위치) 방글라데시 다카 남쪽 약 200 km 인근 BSMSN 경제구역 지역
- (발주처)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상하수도청(CWASA)

※ 방글라데시 경제내각위원회(CCEA)의 금회사업 가승인 시, 주무관청 지정 통보(CCEA → 차토그램 상하수도청 CWASA)

- 사업 범위
 - 취수장 및 정수장 (250MLD 규모)
 - 약 150km 상수관로
 - 송수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
 - ※ 토지보상은 발주처 책임
- 사업 제안 예정자 : BSMSN 컨소시엄(이하 “사업주”)
 - (영문표기) 제안서 내용에 따라 BSMSN Consortium, Sponsors 또는 Proponent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2. 과업기간

-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약 8개월)

3. 과업내용

1) 기존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 KIND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이하 “KIND F/S”) 분석

- KIND F/S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
 - 아래 주요검토 항목별 문제점, 개선사항 분석 및 대안 반영
 - 주요 관련 근거자료 업데이트
- 보고서 주요 검토 항목
 - 제1장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 제2장 사업환경 분석
 - 제3장 기술타당성 검토
 - 제4장 사업비 검토
 - 제5장 재무타당성 검토
 - 제6장 재무상환계획 검토
 - 제7장 법률타당성 검토

□ 발주처 Commercial Feasibility Study* 보고서 분석

- * 공식 명칭은 Detailed Feasibility Study
- 발주처의 Commercial Feasibility Study 보고서의 전반적인 검토
 - 문제점, 개선 또는 보완사항 등 분석
 - 주요 관련 근거의 업데이트 및 KIND F/S와 주요내용 비교 검토
- 보고서 주요 검토 항목
 - Demand Analysis

- Institutional and Legal Analysis
- Environmental, Social,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Analysis
- PPP Transaction Structures
- Project Risk Assessment
- Cost Benefit Analysis 등

2) 분야별 제안서 작성

□ 공통사항

- 발주처의 RFP 발급을 위한 업무지원 및 RFP 검토
 - RFP에 대해 각 분야별 질의서 작성
- 과업기간 동안 수행할 전반적인 과업 일정표 작성 및 관리
 - RFP를 입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세부 과업 일정표 제출
 - ※ 단, 사업주 수행 과업의 세부 과업 일정표와 통합적으로 작성 및 관리
- 사업주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대면/비대면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 우리 공사 및 사업주가 발주처, 발주처의 자문사, 유관기관 등 회의 시 업무 지원 및 필요시 참석
- 본 과업 및 사업주 수행 과업(지반조사, 입찰설계 등 기술분야 용역)의 성과물을 종합하여 RFP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업제안서 작성 또는 이에 대해 협조
- 사업주의 투자심의자료 작성 지원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제안서에 포함하고 필요시 발주처 등과의 협의를 지원

□ 기술 분야

○ 자료 수집 및 기초 현황 보완

- BSMSN 경제구역의 인프라 현황 관련 발주계획 조사 및 진행사항 검토 등
- 방글라데시에서 운영 중인 기존 수도시설 현황 (시설공정 및 운영 현황, 개선사항 등)
- 방글라데시 상수도시설 설계기준 및 변경사항 확인
- 취수예정지역 인근 방글라데시 물개발위원회(WDB)에서 축적한 최신 수질 데이터 등
- 사업지역의 지질 분포 및 구조, 역사(지진통계, 발생주기, 위험도 등) 조사
- RFP 발급일 기준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고시(변경) 현황, 공업지역 내 입주 및 분양(입주의향서 포함) 현황 조사
- 방글라데시 상수도요금 및 유사 산업단지 공급용수 단가 현황 조사
- 기타 시설규모 및 단계별 수요량 예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조사

○ 측량조사

- 최종 시설물 위치 예정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재확인
- 최적 세부 노선계획에 따른 노선측량 검토 및 보완
 - ※ KIND F/S 결과를 바탕으로 측량오류, 누락,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재측량 실시

○ 토질조사

- 최종 시설물 및 세부 노선(안)에 대한 토질조사 결과 재확인
 - ※ KIND F/S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이상, 누락,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재조사 실시

○ 기존 예정 취수원 검토

- 예정 취수지점에 대하여 공사 및 유지관리 측면으로 고려하고 장래의 유로변경, 부유물 및 퇴사 등에 의한 취수 장애 검토
- 취수원의 수질현황은 KIND F/S를 참조하고 공인된 수질 관측 지점의 최신 측정자료를 반영하여 재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수질 조사 시행
- 용수 공급 전망 및 용수 배분 계획 검토 및 보완
 - 조사한 용수 수요 추정 데이터를 통한 배분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반영
 - ※ 필요시 BEZA 등 유관기관 협의 지원
- 주요 시설물 계획
 - 시설의 위치, 제원, 규모 등 설계 주요인자 관련 방글라데시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상위계획 등을 반영한 종합 검토를 시행
 - 조사팀 구성 및 기존 계획노선 대비 선정된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변경된 현황과 최적 세부노선 검토
 - 시설의 유지관리체계 및 장래 개발 전망과 시설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시설물 계획시 기존 조사와 금회 수행될 현황측량을 통해 실제 지형 및 형상 반영을 통한 최적안 수립 (계획평면도/구조물 일반도/관로 주요 지점 종횡단도 등)
 -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 조사
 - 주요시설물 위치의 자연환경 여건 (취수조건, 지형조건, 지질조건, 토지 이용계획),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 장래시설계획, 단계별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향후 산업단지 내 용수 수용량의 부족 또는 발주처 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된 정수를 다른 수요처로 분기·이송 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 검토
 - 기계/전기/계측제어별 전기인입 방법 및 통합감시제어방식 검토 제시
 - 수립된 시설물 계획에 대한 적정 사업비 산출 및 검토

□ 재무 분야

○ 재원 조달계획 수립

- 한국수출입은행,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Bilateral Development Bank, 국제상업은행들과의 협의를 위한 사업설명서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협의 지원
- 사업주가 금융주선기관(Mandated Lead Arranger)를 선정할 경우 관련 자료 제공, 협의 등 협조
- 잠정적인 대주단의 LOI(Letter of Intent), 주요 조건(Term Sheet) 등 검토
-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EDPF 자금 활용방안 검토 (Viability Gap Financing (VGF) 및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지원 재원 등)
-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정부 당국과의 협의 지원
-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구조를 위한 Senior Debt, Mezzanine Debt, Equity Bridge Loan, Project Loan 등 자금 조달방법 및 비율 검토
- 이와 더불어 ECA Loan, MDB Loan, 현지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 실시협약 체결 후 대주단 협상, 금융약정, 금융종결 등 전반적인 재원조달 일정 제시, 단 금융주선기관이 선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금융주선기관의 계획을 반영
- 환율변동 및 환전리스크 헷지를 위한 전략과 현지통화(local currency)를 활용한 재원조달(currency mix)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사업 대상국 외환 자금 입출금 관련 제도 및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재원 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법인 (Project Company)의 자금운영계획 수립

○ 재무모델 작성

-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VGF, 수요량, 요금, 물가상승률, 이자율, 환율,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이 반영된 MRG 모델 작성
- MRG 보장기간 내 연도별 최소수익보장금액(사업주 기대수익률 확보 수준) 산출을 통한 적정 MRG 보장 비율 산정
- MRG 보장기간 후 사업주 기대수익률 확보를 위한 적정 요금 민감도 분석

- 운영 개시 후 사업시행법인의 최소 1년 이상의 자금운영 주기를 분기 단위로 재무모델을 작성하여 최소수익 미달, 발주처 및 유관기관 통보 및 MRG 지급 신청, MRG 지급, 원리금 상환 등 발주처와 사업시행법인 간 MRG 관련 절차와 일련의 이행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
 - 공사비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미화(USD)와 현지화 통화의 적정 비율 및 조달방안 제시, 단 과업 초기인 경우에 이와 관련된 조사 또는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와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방안을 제시
 - 사전선납법인세(Advance Income Tax) 등 사업 대상국의 조세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금흐름에 반영
 - 제안서 제출 후 협상 시에 발주처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협상 제안을 위해 또는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모델 수정
- 재무 분석 및 리스크 분석
- 예상수요량 및 MRG 보장 수준에 따른 수익성지표 분석(NPV, ROE, ROI, 회수기간 등)
 - 주요 가정사항 변경에 따른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 VGF, 예상수요량 및 MRG 보장수준에 따른 발주처 재정부담 분석
 - 물가변동, 이자율변동, 운영·유지관리 위험, 정치·불가항력 위험에 따른 완화대책(Mitigation Plan) 수립
- 조세제도 및 관행
- 민관협력사업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조사하고 재무분석에 반영
 - 사업주 또는 한국의 투자 기업들이 배당의 지급,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의 의무와 예상되는 세금을 제시
 -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주요 세금의 부과, 신고, 납부, 원천징수, 선납, 환급 등 사업 대상국의 제도 및 관행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또는 관행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와 세무 당국과의 협상 등 이에 대한 대책 제시(과업 착수 2개월 내)하되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기한 조정 가능
 - 사업시행 법인에 적용되는 면세, 감면 등 세법 관련 조항이 수행에 참여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용역 계약자, 건설공사 계약자, 운영관리계약자(각각 원청, 하청 및 납품 등 포함)에 적용되는지 검토

□ 법률 분야

- RFP의 법률 관련 조항 검토
 - 발주처 공고 RFP에 대한 법률부분 분석 및 사업제안 적용방안 제시
 - RFP 부속 서류에 대한 법률 검토 (Consortium Agreement, Affidavit 등)
 - 조항 간 불일치 사항 및 독소조항 검토를 통한 DQ(Disqualification)방지
- 실시협약 초안(Draft Concession Agreement) 검토
 - 주요 조건(계약당사자, 계약기간, 발주처 및 사업주 공사 착수 전 사전 이행사항, 토지 수용 및 ROW확보, 환율 및 물가변동, 불가항력 등) 검토
 - 조항 간 불일치 사항 및 독소조항 검토
- 실시협약에 최종 반영되어야 할 조건, 이를 위한 관련 근거 또는 사례 등 제시
- 몰수, 외화 환전 및 송금 불능, 정치적 혼란, 정부 계약 불이행 등 정치적 위험에 대해 국제기구 등의 관련 보험을 통한 Risk-hedge 방안 제시

3) 사업제안서 제출 후 협의 지원

- 제안서 제출 후 관련 협의 등 사업주의 대 발주처 및 유관기관 업무 지원
 - 평가 관련 추가자료 제출 등 제반 지원
 - Clarification Meeting(Dialogue Meeting, 협상 등 포함) 자료 준비 및 필요시 참석
 - 재무모델 담당자는 본격적인 재무 관련 협의 또는 Clarification Meeting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우리공사 및 사업주 요청 시 사업 대상국에 체류하면서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의 미팅을 지원. 단, 1회 기간이 3주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 하여 결정
 -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Clarification Meeting 시 세무를 포함한 재무 관련 세부적인 협의(안)을 제시
 -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Clarification Meeting 시 법률 관련 세부적인 협의(안)을 제시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 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 수행 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 및 사업주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용역은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작성을 우리공사가 지원하는 과업으로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세부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수행자는 사업주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발생 시 우리공사를 통하여 상호 협의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대비 업무수행역량이 동등 이상인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무모델을 직접 작성하거나 시연, 설명하는 자는 물산업분야 재무모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사업비, 금융 등 재무 관련 협의 또는 Clarification Meeting 시에 충분한 영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의 RFP 발급이 지연될 경우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변경하여 수행함. (단, RFP 발급이 과업착수 후 4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별도 협의 예정)

□ 성과물 작성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 필요시 요약 국문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되는 용어는 영문 및 국문(요약 국문본의 경우)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와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 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사업주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우리공사 및 사업 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주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필요시,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해외출장

- 대상사업의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우리공사 및 사업주의 업무지원을 위해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출장계획을 우리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출장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활동 내역 등 지원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이나 방글라데시 정부측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 등 필요할 경우 감독부서 현지 방문 시 동행해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공정현황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 방식 및 양식은 착수 후 별도 결정)
- 익월 5일이 제안서 제출 15일 이내일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제안서 제출 이후로 결정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우리공사와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제안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함(사업주 시행분 포함)
 -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개요
 - 용역별 주요 내용 및 결과(“사업 제안서”)
 - 사업 대상국과의 협의 내용
 - 사업 전반에 관한 동향 및 향후 계획 등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 또는 협상으로 인해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 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용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 (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II. 예정공정표

항 목		1 개 월	2 개 월	3 개 월	4 개 월	5 개 월	6 개 월	7 개 월	8 개 월	비 고	
1. 예비 조사 (RFP 발급전)		■								발주처 RFP 발급	
2. 제안서 작성			■								
1) 기술,재무,법률			■								
2) 성과품 작성						■				사업주 과업 성과물 제공	
3. 제안서 제출 후 (Clarification Meeting)							■				
보고회		착 수 보 고			중 간 보 고	최 종 보 고					
과업 진도율	당기	5	20	20	20	20	5	5	5		
	누적	5	25	45	65	85	90	95	100		

- 1개월차에 사전조사 (2023.09월말 RFP 발급 기준)
- 성과품(사업제안서) 작성 중 필요 시 중간보고 실시
- 사업주 최종제안서 발주처 제출 전 최종보고 실시